

KOREA EXPO EXPO 참가 신청서(계약서)



2014. 12. 18(목) ~ 19(금)
코엑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3길 32 나라빌딩 6층
전화 : 02-567-5311, 팩스 : 02-2051-3319
E-mail : lee@keoa.org, help@keoa.org
http://www.keoa.org

1. 신청 및 계약자

업체명 (사업자등록기준)	한글 :		
	영문 :		
대표자			
주소	(_)		
담당자		소속 및 직위	
핸드폰		E-mail	()
전화		FAX	()
홈페이지			
주요전시품목			

2. 전시공간 신청

구분	신청내역	단가 (원)	금액 (VAT별도)
기본부스	() Booth(s)	1,300,000	원
독립부스	() Booth(s)	900,000	원

* 부스단위 : 1부스(3m x 3m = 9m²)이며 독립부스는 두개의 부스 이상 신청하여야 합니다.

- 참가비납부 : 한국외환은행 무역센터지점(630-008042-954) / 예금주 : 한국전시주최자협회
-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첨부참조)을 수락하고 계약금(참가비의 50%)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동봉, 상기와 같이 KOREA EXPO EXPO에 참가 계약을 신청합니다.
- 8월 24일 이후에는 참가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가업체			주최자		
년	월	일	년	월	일
계약담당자 :		(인)	계약담당자 :		(인)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 본 계약서에 날인한 사람은 참가업체 및 주최자를 대표하여 본 계약서 내용을 이행한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었음을 보장한다.

※ 참가신청(계약)과 주최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체결로 인정하며 참가신청 취소시 참가규정 제6조에 의하여 위약금이 적용된다.

전시회 참가(계약)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소정의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조합 및 단체 등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KOREA Exhibition EXPO (한국전시산업전)을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사)한국전시주최자협회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및 계약)

1. 전시회 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와 동시에 참가비의 50%를 납부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2. 참가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주최자가 "전시회"의 원활한 구성과 진행을 위해 참가를 승인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제3조 (전시면적 배정)

1. 주최자는 신청 및 참가비 납입 순에 따라 전시 위치를 배정한다.
2. 주최자는 전시회의 공간 조화와 관람효율 및 전시효과 등을 고려,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전시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 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Booth)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락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및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명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형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 (납입조건)

1. 전시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신청금을 참가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납입해야 하며, 잔금은 전시개최 90일 전까지 납부 기한 내에 납입해야 한다.
2. 전시자가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계약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제6조 (참가 취소 및 규모 축소에 따른 위약금)

1.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 부스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전시자가 전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전시자는 반드시 전시개시 90일 이전에 주최에게 서면으로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 납부된 참가신청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3.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 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 해약금으로 차감하고, 부족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시 반환한다.
 - 2013년 9월 13일 이전 취소 : 참가비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 2013년 9월 25일 이전 취소 : 참가비의 80%를 위약금으로 납부
 - 2013년 9월 25일 이후 취소 : 참가비의 전액을 위약금으로 납부

제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1. 주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 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만약, 설치 기간동안 시간외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주최자의 허락을 받은 후 시간외 사용료를 전시자가 주최자에 지불하여야 한다.
2. 모든 장치업체 선정은 전시장에 등록된 업체에 한한다.

제9조 (전시품 및 장치물 진열)

1. 전시자는 전시기간 내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지용은 즉시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시장내 경비, 위험부담, 도난 및 보험)

1. 주최자는 전시회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하는 배당 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기자재, 전시품 및 진행요원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

제11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하는 배당 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누전, 방화 및 화재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12조 (보충규제)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보충규제를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해결)

1. 본 참가 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Signature : _____